

[별표 1] <개정 2011.3.11>

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(제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1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,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(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)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.
- 2)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,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.
- 3) 위탁 및 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·제19조·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(이하 “전과정위탁·인정제한”이라 한다)의 효력을 갖는다. 다만,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 및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(이하 “해당과정위탁·인정제한”이라 한다)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)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의 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과의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.
- 5)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.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.
- 6)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·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.
- 7)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(1년간 해당과정위탁·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)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과정위탁·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·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.
- 8)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·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·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·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.

- 9) 수탁기관이 지부·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,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,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·분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·분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조문	처 분 내 용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	법 제16조 제2항제1호	계약해지와 1년 전과정위탁 · 인정제한
2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가)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)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다)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)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마) 2천만원 이상인 경우	법 제16조 제2항제2호	계약해지 계약해지와 3개월 전과정위탁 · 인정제한 계약해지와 6개월 전과정위탁 · 인정제한 계약해지와 1년 전과정위탁 · 인정제한 계약해지와 2년 전과정위탁 · 인정제한
3)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가) 훈련기간, 훈련시간, 학급 편성, 훈련교사, 훈련장소, 훈련시설·장비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나) 훈련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(1)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 선발한 경우 (2)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다)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(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 (2) 훈련생에게 근로를 강요한 경우	법 제16조 제2항제3호	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위탁 · 인정제한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위탁 · 인정제한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과정위탁 · 인정제한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과정위탁 · 인정제한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과정

(3) 훈련생 부담금을 부당 징수한 경우 (4)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라)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한 경우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마)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		위탁·인정제한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과정 위탁·인정제한 시정요구 시정요구 시정요구
4)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6조 제2항제4호	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과정 위탁·인정제한
5)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	법 제16조 제2항제5호	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과정 위탁·인정제한